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17852 판결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독촉]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178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5 선고 2020가단51639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원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2. 5. 10.

판결선고 2022. 7.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5. 선고 2020가단5163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E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말한 점, 피고와 E이 부부사이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이 E의 진술에 따라 해제가 되기도 한 점, 피고와 E의 아들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E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었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작성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고와 만나거나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E으로부터 들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고, 경매나 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아들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E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흥관, 판사 윤동연